

1. 간행위원회

- 1) 간행위원회 구성, 임무에 관한 내규 : 별도작성
- 2) 편집위원 선정기준 및 절차 : 별도 작성

2. 논문심사

- 1) 원고는 대한신생아학회 홈페이지(www.neonatology.or.kr) 또는 Neonatal Medicine의 홈페이지(www.neo-med.org)의 전자투고 사이트로 투고합니다.
- 2) 간행위원회는 투고된 원고의 투고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규정에 맞지 않는 원고를 반송합니다.
- 3) 간행위원회는 투고규정을 준수한 원고의 책임저자에게 원고의 접수 통지합니다.
- 4) 간행위원회는 투고된 원고의 심사를 3인의 심사위원(주심 1명, 부심 2명)에게 위촉합니다.
- 5) 위촉된 심사위원은 원고를 검토한 후 본인이 심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즉시 심사 불가의 사유를 밝히고 회신해야 합니다.
- 6) 심사위원들은 원고를 심사한 후 ① 통과 ② 수정 후 게재 ③ 수정 후 재심사 ④ 게재 불가 ⑤ 자문 심사 중의 하나로 판정하고 심사 의견과 함께 심사결과표를 작성합니다.
- 7) <자문 심사>는 각 분과학회 및 기타 전문 위원회 또는 기관 등에 자문이나 질문이 필요한 경우, 협조를 얻어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 8) 투고된 원고의 내용은 저자의 지적 재산으로 심사위원들과 간행위원회 내부에서만 검토되어야하고 출판 전에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합니다.

3. 논문심사의 결과

- 1) 간행위원장은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① 통과 ② 수정 후 게재 ③ 수정 후 재심사 ④ 게재 불가 중의 하나로 1차 심사의 총평을 하여 심사위원을 무기명으로 하여 저자에게 통보합니다.
 - ① <통과>는 무수정으로 심사에 통과된 논문으로 바로 인쇄과정으로 넘겨집니다.
 - ② <수정 후 게재>는 지적된 사항을 저자에게 통보하고 저자가 수정하여 재 접수하면 주심사위원이 수정되어온 사항을 심사, 검토하여 ① 통과 혹은 ② 수정 후 게재 로 판정하고 저자에게 통지합니다.
 - ③ <수정 후 재심사>는 논문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저자에게 통보하여 저자가 수정하여 재 접수 하면 3인의 심사위원(주심 1명+부심 2명)이 다시 논문을 심사합니다. 간행위원장은 심사위원들의 2차심사결과를 종합하여 ① 통과 ② 수정 후 게재 ③ 수정 후 재심사 ④ 게재 불가 중의 하나로 2차 심사 총평을 하여 저자에게 통지합니다.
 - ④ <게재 불가>는 3인의 심사위원 중 게재불가로 심사된 것을 전체 간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 불가로 결정합니다.

- 2) <수정 후 게재> 또는 <수정 후 재심사>의 통보를 받은 경우 저자들은 반드시 심사위원의 지적사항이나 질문 및 개선 요구에 대해 구체적인 서면답변을 작성해서 개정된 논문과 함께 보내야 합니다. 구체적인 서면 답변이란 책임저자가 간행위원장에 보내는 편지의 형태로 심사위원별로 지적된 사항을 먼저 적고 이에 대한 수정 사항 및 답변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일일이 적어 내려가는 형태를 취하도록 합니다. 특히 심사위원의 권고 사항에 대해 응하지 않는 경우는 이에 대해 적절한 이유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4. 논문게재 여부 결정에 대한 간행위원의 심사기준

- 1) 원저로서 논문제목이 기존에 발표된 질환의 임상적 고찰인 경우, 기존에 발표된 논문과 다른 새로운 결과나 결론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게재가 불가합니다(예: 주산기 가사의 임상적 고찰)
- 2) 증례보고의 경우, 이미 원저로 발표된 질환이거나, 기존에 이미 발표되었던 증례는 원칙적으로 게재가 불가합니다. 단, 국내, 또는 세계적으로 매우 희귀하거나, 기존의 증례에서는 보고 되지 않았던 특이한 임상조건, 최신기법을 이용한 진단방법, 새로운 치료방법의 시도, 과거에는 발표되지 않았던 동반질환 등이 있는 경우 간행위원회 심의에 따라 게재 가능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인터넷 검색사이트 및 관련잡지들의 논문 색인을 참조하여 비슷한 내용의 증례보고 여부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 약물이나 제품의 효과를 조사한 논문인 경우, 간행위원회의 심의 결과 학문적인 가치보다는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분야에 해당하는 전문가에게 위촉하여 공식적인 의견을 자문 받고 난 후, 신생아학회지 게재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면 게재가 불가합니다.
- 4) 간행위원회 심의 결과 투고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거나 논문자체에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어 이에 대한 저자의 의견 및 개선여부를 문의하였으나 답변을 보내오지 않는 경우는 규정상 게재가 불가합니다.
- 5) 과거에 이미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내용의 논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게재가 불가합니다.

5. 교정쇄 처리 및 인쇄

논문심사의 절차를 거쳐 <통과>된 논문은 출판사로 넘겨져 인쇄과정을 거칩니다. 출판 전 교정쇄는 책임저자 또는 저자에게 넘겨져 교정을 거치고 필요에 따라 교정 횟수를 늘릴 수 있으며 오자 및 오류는 궁극적으로 저자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교정 시에는 본문 전체에 대한 자세한 교정은 물론 제목, 이름, 소속(한글, 영문) 등에 오자가 없는지 정확히 보아야 하며, 대, 소문자의 올바른 사용, 사진 위치 및 참고문헌의 게재방식을 다시 확인함은 물론 오자나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를 잘 확인하여야 합니다.

6. 배부

인쇄과정을 거친 잡지는 배부처에서 배부되고 각 책임저자 또는 저자들에게 별책이 배부되며 소정의 게재료와 별책대 등이 청구됩니다. 저자들은 청구된 소정의 게재료 및 별책대 등을 납부해야 하며, 천연색 사진의 게재가 필요한 경우 저자가 추가 부담 하여야 합니다.

7. 게재 예정 증명서

1) 논문의 심사가 완료되어 출판 단계로 넘어간 논문에 대해서는 앞으로 <Neonatal Medicine> 잡지에 게재될 <게재 예정 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2) 전문의 시험 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논문심사가 통과되었으나 아직 인쇄가 안 된 논문에 대해서는 <게재 예정 증명서>를 발행하고, 2부 가제본의 별책을 제작하여 전문의 시험에 임할 수 있습니다. 가제본에 소요되는 경비는 별책 발행 시 포함되어 청구됩니다.

8. 전자논문투고규정과 투고시 저자점검표의 한글 상세본은 website: <http://submit.neo-med.org>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